

電氣用品安全管理法

改正趣旨와 內容

The Amendment Purport and its Contents for the
Safety Management Rule of Electric Articles

姜 鎬 先

工業振興廳 安全管理課長

1. 電氣用品安全管理法 概要

가. 目的 및 對象品目

(1) 目的

電氣用品의 製造·販賣 및 使用에 관한 事項을 規制함으로써 不良電氣用品으로 인한 危險 및 障害의 發生을 防止함을 目的으로 한다.

(2) 電氣用品의 範圍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工作物의 構成部分이 되거나 電氣工作物에 接續하여 사용되는 機械·器具 및 材料로서 工業振興廳長이 定한 品目.

구 분	품목수	품목예시
1. 전선류	21	전선, 케이블, 코드
2. 퓨즈류	7	온도 퓨즈, 동형 퓨즈
3. 배선기구류	45	스위치, 콘센트
4. 전류제한기	3	정액용 전류제한기
5. 소형단상변압기, 전압조정기 안정기류	12	전압조정기, 변압기, 형광등용 안정기
6. 소형교류전동기구류	8	단상전동기, 농형 3상 유도전동기
7. 전열기구류	77	전기장판, 전기다리미
8. 전동력용용기계기구류	84	선종기, 냉장고

구 분	품목수	품목예시
9. 전구류	9	백열전구, 소형전구
10. 광원응용기계기구류	13	전기스텐드, 형광등기구
11. 전자응용기계기구류	30	TV, 앰프, 전자오락기구
12. 기타교류용전기기계기구류	8	직류전원장치, 조광기
13. 휴대발전기	1	휴대발전기
14. 합성수지제전선관류	3	합성수지전선관
15. 합성수지제 등 전선관용 부속품류	7	합성수지제등의 커플링
16.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류	8	금속제 커플링
계	336	

나. 電氣用品의 製造 및 輸入

(1) 電氣用品 製造業 許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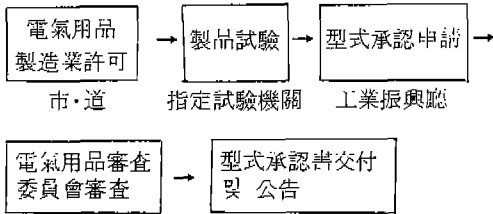
電氣用品의 製造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電氣用品 製造區分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2) 電氣用品의 型式承認

· 電氣用品 製造業者는 製造하고자 하는 電氣用品의 型式에 관하여 型式區分別로 工業振興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電氣用品을 輸入하여 販賣하고자 하는 자는 電氣用品의 型式에 關하여 型式區分別, 製造業者別로 工業振興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

- 型式承認 有效期間: 3年
- 型式承認 節次



(3) 承認表示

電氣用品 製造業者는 그 電氣用品을 販賣할 때 에는 型式承認을 얻은 當該 電氣用品에 ㉞ 表示와 기타 必要한 表示(工業振興廳長이 告示)를 하여야 한다.

(4) 電氣用品 製造業許可 및 型式承認 現況 (표 1 참조)

다. 電氣用品의 販賣, 使用

(1) 販賣禁止

電氣用品의 販賣業을 하는 자는 承認表示(㉞ 및 型式承認番號)가 없는 電氣用品의 販賣와 陣列을 禁하고 있다.

(2) 使用禁止

電氣事業者, 電氣工作物設置者 또는 電氣工事業者는 承認表示가 없는 電氣用品의 使用을 禁하고 있다.

2. 電氣用品安全管理法의 改正趣旨

<표 1>

제 조 구 분 별	제 조 업 허 가					형 식 승 인				
	'87년말 누계	'88년			'88년말 누계	'87년말 누계	'88년			'88년말 누계
		허가	취소	계			승인	취소	계	
1. 전선류	61	5	4	1	62	1,118	90	142	-52	1,066
2. 퓨즈류	23	3	2	1	24	105	16	17	-1	104
3. 배선기구류	127	15	8	7	134	1,080	143	131	12	1,092
4. 전류제한기	0	-	-	-	-	-	-	-	-	-
5. 소형단상변압기	103	21	3	18	121	1,152	351	166	185	1,337
6. 소형교류전동기류	54	4	3	1	55	320	57	42	15	335
7. 전열기구류	263	46	19	27	290	1,216	301	217	84	1,300
8. 전동력응용기계기구류	219	42	15	27	246	1,046	263	177	86	1,132
9. 전기구류	77	12	3	9	86	559	295	32	263	822
10. 광원응용기계기구류	152	18	14	4	156	1,104	221	265	-44	1,060
11. 전자응용기계기구류	140	33	17	16	156	848	225	113	112	960
12. 기타교류용전기기구류	80	15	6	9	1	161	39	21	18	179
13. 휴대발전기	1	1	1	0	61	3	0	0	0	3
14. 합성수지계전선관	51	13	3	10	15	85	15	7	8	93
15. 합성수지계전선관부속품	14	2	1	1	22	52	1	8	-7	45
16. 금속계전선관용부속품	16	6	0	6	22	53	9	7	2	55
계	1,381	236	99	137	1,518	8,902	2,026	1,345	681	9,583

[주] 製造業체數: 1,133 業体
輸入電氣用品 型式承認 件數: 374 件

不良電氣用品으로 인한 危險 및 障害의 發生防止를 目的으로 1974년 1월 4일 制定하여 施行하고 있는 電氣用品安全管理法에 대하여 經濟規模의 급격한 膨脹과 技術發展에 맞추어 體系를 再定立하고 國際的 通商摩擦의 소지를 除去함과 동시에 民願人的 便宜圖謀와 行政의 實效性 確保 등 現行 規定上 未備點을 補完하기 위하여 이의 改正案을 마련하였다.

電氣用品 安全管理法의 改正 취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모든 電氣用品은 一律的으로 製造業의 許可와 型式承認을 받도록 하던 것을 危害性의 高低에 따라 規制의 정도에 차이를 두도록 하고, 製造業許可도 登錄制로 바꾸는 등 電氣用品에 대한 規制를 大幅 緩和함으로써 緩和에 따른 業務量의 減少로 電氣用品 安全管理業務의 效率性을 提高한다.

나. 外國의 電氣用品 製造業체가 우리 나라에 그 製品을 輸出하고자 할 때 國內業체와 同一하게 製造業의 登錄과 型式承認을 받도록 하여 電氣用品에 대한 輸入規制 障壁을 없애므로써 國際的 通商摩擦의 소지를 제거한다.

다. 型式承認의 有效期間을 3年에서 品口에 따라 7年까지 延長하며, 不利益 處分時 聽聞制度의 導入과 罰則의 上向調整에 의한 行政의 實效性을 確保하는 등 現行 規定上의 未備點을 補完한다.

3. 主要 改正內容

가. 電氣用品의 區分 및 申告制 導入

種 類	區 分	認許可制度	品口數	備 考
1種電氣用品	危險 및 障害의 발생우려가 많은 많은 품목	電氣用品製造業 登錄 電氣用品 型式承認	230 餘種	電 線 電氣세탁기
2種電氣用品	1種以外的 電氣用品	電氣用品製造業 申告 電氣用品輸入業 申告	100 餘種	白熱電球 音響器具

나. 外國 製造業者에 대한 製造業登錄 및 型式承認의 許容

- (1) 전기용품 제조업 등록
外國製造業者도 製造業登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2) 전기용품 형식승인
外國登錄製造業者도 型式承認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型式承認 有效期間의 延長

型式承認 有效期間을 使用上의 安全性, 技術의 進歩, 모델 變更頻度 등을 고려하여 品口別로 달리 規定함.

- 現行：全品口 3年
- 改善：3~7年(TV·전기그릇세척기：3年, 전구류：7年)

라. 輸入電氣用品의 型式承認 確認制度 新設

1種電氣用品 輸入販賣業者가 販賣하고자 하는 1種電氣用品의 型式에 對하여 다른 1種電氣用品 輸入販賣業者가 型式承認을 받고 있는 製品과 同一한 型式區分에 속하고 同 製造業者의 製品임을 工業振興廳長이 확인한 때에는 그 確認을 받은 1種電氣用品 輸入販賣業者는 그 1種電氣用品이 型式에 對하여 型式承認을 받은 것으로 認定함.

마. KS 製品에 대한 型式承認 免除根據 設定

KS表示許可를 받은 1種電氣用品에 대한 型式承認은 이를 免除할 수 있는 根據를 設定함.

바. 聽聞制度 新設

製造業登錄 및 型式承認의 取消時에 聽聞 機會 附與.

사. 罰則制度 改善

- (1) 刑事處罰하던 것을 業務怠慢의 境遇 過意料만 賦課하도록 함.
- (2) 罰金額을 類似法規 水準으로 上向調整.